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현 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867호
- 나. 제 안 자 : 이동현의원 외 21명
- 다. 제안일자 : 2019년 8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2. 제안이유

-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국가기관에서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서울수도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
- 서울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적이익을 증대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민의 권익 향상

##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계획하며 관련 정책의 수립 시 소셜벤처 협의기구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소셜벤처의 요건을 정하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소셜벤처 확인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및 제8조)

마.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는 소셜벤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소셜벤처의 정의 (안 제2조)

- 소셜벤처는 사회적가치 실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근거 법령이 미비하고 지원 인프라가 부족하며,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도 없는 상황임.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를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지닌 기업가가 기존과는 다른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을 바탕으로 소셜벤처를 판별하고 있음.

-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주최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경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적인 기업 모델”로 소셜벤처를 정의하고 있음.
- 서울시는 별도로 소셜벤처를 정의하진 않았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판별표를 참고하여 사회적, 혁신성장성 두 가지 기준으로 소셜벤처 허브센터의 입주기업을 선정 중에 있음. [참고자료1]
- 안 제2조는 소셜벤처를 “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법인”이라 정의하고 있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음.
- 소셜벤처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 모두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기업의 혁신성과 벤처기업의 특화된 내용을 추가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다.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3조, 제5조~제6조)

- 안 제3조는 소셜벤처의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 사회적가치 실현에 필요한 각종 시책의 추진 의무를 서울시장(이하 “시장”)에게 부여하고, 안 제5조는 소셜벤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장에게 소셜벤처 생태계 육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시책 추진 의무를 부여하고, 중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3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급변하는 소셜벤처 생태계 환경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환류하는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라. 소셜벤처의 요건 및 확인 (안 제7조, 제8조)

- 안 제7조는 소셜벤처의 요건을 나열하고 있으며, 안 8조는 각 기업·법인·단체가 소셜벤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청할 경우, 시장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소셜벤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제외한 사회적경제기업 모두가 해당되며, 그 외에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사회적가치 실현과 ▷법인의 해산·청산 중 소셜벤처 기부<sup>1)</sup>등을 규정하고 있으면, 1인 창조기업, 「민법」 상의 법인·조합, 「상법」 상의 회사·합자조합 등도 소셜벤처로 분류할 수 있음.

---

1)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소셜벤처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기업 요건 비교〉

안 제7조(소셜벤처의 요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제2호(“사회적경제기업”의 요건)
<p>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p> <p>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 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p> <p>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자활기업</p> <p style="text-align: center;">〈정관·규약 등에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경우〉</p> <p>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p>	<p>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p> <p>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p> <p>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p> <p>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노동사업단(보건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p> <p>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p>
<p>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p> <p>3.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p> <p>4.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p> <p>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p>	<p>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p>

- 최근 사회적 가치(Creating Shared Value)의 창출과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이 중요한 기업 경영전략으로 대두되고 있고, SK 등 대기업에서도 정관에 사회적 가치를 경영원칙으로 반영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정관에 단순히 사회적 가치를 규정한 것으로 소셜벤처로 인정하게 되면 소셜벤처의 규모가 너무 광범위해질 수 있으므로, 소셜벤처 요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안 제8조에 따른 소셜벤처의 확인은 소셜벤처의 요건을 바탕으로 별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마.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의 설치 (안 제9조~제11조)

-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심의하는 소셜벤처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소셜벤처 관련 사항들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지원하는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지방자치법」 2) 및 「서울시 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 사회적경제 분야 전반을 논의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해당 역할을 대신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실제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의 협동조합위원회의 경우,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음<sup>3)</sup>.

#### 바. 소셜벤처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소셜벤처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셜벤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 민간 위탁의 근거를 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사업모델 멘토링, 제품개발, 투자연계, 협업공간 마련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소셜벤처 전문보육기관인 지원센터를 설치(2019.10)할 예정임.
- 따라서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

2)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제7조 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협동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로 판단되며, 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소셜벤처를 보육·양성할 수 있게 되어 소셜벤처의 생태계 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소셜벤처에 대한 각종 지원 (안 제13조부터 제20조)

-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소셜벤처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경영지원(안 제13조), 시설비, 불용물품 등 지원(안 제14조), 사회투자기금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안 제15조),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지원(안 제16조), 우선 구매 촉진(안 제17조), 협의기구 등의 지원(안 제19조), 국제 협력 지원(안 제20조) 등임.
- 이상의 소셜벤처 지원 정책과 인프라의 제공은 지속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구성과 자생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고, 협의기구과 국제협력 지원을 통해 국내·외 소셜벤처 인식 제고와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 종합의견

-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기업유형인 소셜벤처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며, 이러한 소셜벤처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근거는 필요함.



- 그러나 현재 소셜벤처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개념조차 불분명한 상황인 바, 명확하고 통일된 소셜벤처의 정의와 요건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소셜벤처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제공 중인 지원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사회적경제분야의 통합적 연계와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유사 조례와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재정립하고 중복·상충 문제를 우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

[참고자료 1]

# 소셜벤처허브센터 소셜벤처 판별 기준표

**소셜벤처 판별 기준표 적용 가이드**

1) 사회적 및 혁신성장성 각각 70점 이상인 기업을 소셜벤처로 판별

2) 혁신성장성의 경우, 판별기준(70점)에 미치지 않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신청 기업의 사업 내용의 구체성·타당성 및 사업 모델의 수익성·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소셜벤처로 인정

- 사업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시장분석의 구체성, 일정별 추진계획의 적절성, 자금 조달 및 운용계획의 타당성,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의 구체성
- 사업 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 수익창출 구조의 타당성, 매출비용 예산의 적절성, 시장진입 가능성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 경쟁력 확보 현황 및 계획

**사회성 판별표**

사회성 판별표				
	판별항목	배점	해당여부	비고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가 또는 인증받은 사회적경제 기업(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100		
2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		
3	비콥(B-Corp) 인증을 받은 기업	50		
4	회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또는 해결하려는 사회적 문제가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 <sup>1)</sup> 되어 있고 추진 <sup>2)</sup> 중인 기업	50		
5	사회적 성과의 측정 및 보고 체계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하고 있는 기업	50		
6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이윤의 배분' 및 '청산 시 처분제한' 원칙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실행 <sup>3)</sup> 하고 있는 기업	20		
7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 <sup>4)</sup> 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	40		
8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 <sup>5)</sup> 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	40		

사회성 판별표				
판별항목	배점	해당여부	비고	
9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MOU, 상생협약, 협력관계 등 사업의 주목적과 관련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	10		
10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조직(기업의 해당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보유	10		
11	대표자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	5		
12	대표자가 사회적 가치 창출 또는 소셜벤처 관련 활동(대학 동아리, 대학 내 창업, 공모전)을 수행	5		

## □ 혁신성장성 판별표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항목	배점	해당여부	비고	
1	법령상 인증·확인 보유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100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고용인원의 연평균 증가율이 20%인 기업	100		
3	중앙정부, 지자체의 펀드를 취급하는 기관의 주목적 계정 중 소셜 임팩트 분야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100		
4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의 본계정에서 3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	50		
5	기술력 또는 상품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증 <sup>6)</sup> 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기업 중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50		

- 1) 예시 :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의 자유 추구 등
- 2) 관련 증빙 자료는 기업 스스로가 제출해야 함(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증빙없이 접수 부여)
- 3) 정관 외 미션 선언문, 사업계획서, CSR 보고서 등을 말함
- 4)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을 3년 이상 지속한 민간 조직에 해당
- 5)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 등 임팩트투자 단체의 회원 일 것

혁신성장성 판별표

판별항목		배점	해당여부	비고
6	<p>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권, 기술평가를 받거나 심사 후 등록된 실용신안권, SW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실시권 포함)하고 있는 기업</p> <p>*단, 창업 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도 인정</p>	40		
7	<p>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sup>7)</sup>가 5% 이상인 기업(최근 2년 평균)</p> <p>*단, 창업 후 1년 미만인 기업은 신청일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 및 기술개발 금액<sup>8)</sup>으로 확인</p>	40		
8	<p>최근 5년 이내 세계적 규모의 창업경진대회<sup>9)</sup>에서 수상한 기업 또는 수상자(팀)가 해당 분야에서 창업한 기업</p>	40		
9	<p>법령에 의해 등록 또는 지정된 창업지원플랫폼<sup>10)</sup>으로부터 현재 입주 또는 (전문)보육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기업</p>	30		
10	<p>중앙정부의 R&amp;D 기술개발 사업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기업이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p>	20		
11	<p>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한 기업</p>	40		
12	<p>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재단, 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회적 경제 또는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육성된 팀(조직)이 창업한 기업</p>	40		
13	<p>기업(또는 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0백만원 상당 이상의 지분투자 또는 지원을 받은 기업</p>	20		
14	<p>중앙정부의 '혁신성장공동기준'<sup>11)</sup>에 따른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p>	20		
15	<p>자연계 대학교수, 자연계 박사, 기술사 또는 대학 및 상장법인 부설 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자가 창업한 기업</p>	20		

- 
- 6) 산업통상자원부 선정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 10대 신기술상 등
  - 7)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개발비 증가액 + 손익계산서상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 상각액 + 제조원가명세서상 경상연구개발비
  - 8) 기술 및 제품 개발에 관련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 훈련비, 소모성 기자재비, 시약/재료비, 기술도입비, 기술정보비, 외부지원연구비 등
  - 9) 글로벌 소셜벤처경진대회(GSVC), 매스챌린지, 프렌치테크티벳, 깃인더링 등
  - 10) 창업기획사(엑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 11) 정책금융기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미래 혁신성장 분야의 제품 또는 서비스